

연구소 규정

제1장 총 칙

제 1 조(명칭) 이 연구소는 "한국수자원학회 부설 수자원연구소"(이하 연구소), 영문으로는 "Water Resources Research Center, KWRA"(이하 WRRC)라 칭한다.

제 2 조(임무) 이 연구소는 한국수자원학회의 학술활동분야와 관련된 사업을 수행한다.

제 3 조(위치) 이 연구소는 한국수자원학회 내에 둔다.

제 4 조(연구수행유형) 이 연구소는 제2조의 임무를 위하여 다음 각호의 수행방식으로 구분하여 연구를 수행할 수 있다.

1. 자체연구 : 연구소에서 직접 수행하는 연구
2. 수탁연구 : 외부의 의뢰를 받아 연구소에서 수행하는 연구
3. 위탁연구 : 외부에 의뢰하여 수행하는 학문분야의 기초과학과 응용과학에 관한 선행연구, 타당성 조사 등을 말하며, 공동연구와 산학연 협동으로 수행하는 연구
 - 가. 공동연구 : 연구소와 국내외 연구기관, 교육기관, 산업체 및 전문인과 공동으로 수행하는 연구
 - 나. 산학연 협동연구 : 산학연 공동연구 협약에 의해 수행되는 연구
4. 기타연구 : 상기 연구이외의 연구

제2장 기 구

제5 조(기구) 이 연구소는 다음과 같이 구성한다.

- | | |
|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
| 1. 연구소장 | 1명 |
| 2. 전문연구원 | 약간명 (단, 박사급 2인 이상을 포함하여야 한다) |
| 4. 위촉연구원 | 약간명 (박사급, 석사급, 학사급) |
| 6. 사무원 | 약간명 |

제 6 조(연구소장) ① 연구소장은 연구소 운영위원회가 추천하고 학회 이사회가 결정한다.

② 연구소장은 이 연구소를 대표하고 총괄한다.

③ 연구소장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중임할 수 있다.

제7 조(전문연구원) 이 연구소의 연구원은 수자원, 하천, 해안, 항만, 상·하수도, 환경, 방재 분야 등의 박사급 및 석사급이상 학위소지자로 운영위원회의 의결에 의하여 임명 및 해임한다.

제 8 조(위촉연구원) ① 박사 및 석사 이상 학위소지자로 위촉연구원을 연구소장이 임명할 수 있다.

② 단, 수행하는 연구 과제 만료와 동시에 임용 계약은 자동 해제된다.

제 9 조(사무원) 연구소의 제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해서 연구소장은 사무원을 임명, 해임할 수 있다.

제3장 운영위원회

제 10 조(운영 위원회) 이 연구소의 운영에 관한 중요사항의 의사결정을 위하여 운영위원회(이하 위원회)를 둔다.

제 11 조(위원회 구성) 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위원 7명으로 구성하고 구성은 학회 이사회가 결정하도록 한다. 단, 위원회에는 연구소장을 반드시 포함시켜야 한다.

② 위원장의 유고시에는 위원회의에서 임시 위원장을 선출하고 잠정기간 그 직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.

제 12 조(위원회의) ① 위원회의는 재적 위원 2/3 이상의 출석으로 개최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

② 위원회의는 위원장이 이를 소집한다.

③ 위원회의는 반드시 회의록을 작성하고 출석 위원 2명 이상이 서명 날인하여 보존하여야 한다.

제 13 조(심의 사항) 위원회의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.

1. 연구원 임명 및 해임에 관한 사항
2. 연구소의 운영에 관한 기본계획
3. 연구소의 연구활동 및 사업계획에 관한 계획과 결과의 평가
4. 연구소의 예산 심의와 결산
5. 연구 사무의 평가 및 집행 예산의 조정
6. 연구실의 설치 및 폐지
7. 기타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

제4장 재 정

제 14 조(재정) 이 연구소의 재정은 다음과 같이 충당한다.

1. 수탁과제 연구용역비 및 기타 연구비
2. 국가 또는 지원단체의 창조금과 기타 수입금

제 15 조(연구비, 운영비) ① 연구소 명의로 수령한 모든 연구비 및 기타 모든 수입금은 한국수자원학회 재정과 별도의 은행계좌에 예치한 후 연구비 및 경상운영비로 구분하여 집행하며, 수익금은 전액 한국수자원학회 수입금 계정에 반영함을 원칙으로 한다.

② 연구소장은 연구비 및 경상운영비의 사용내역을 매 회계연도 말 운영위원회에 보고하고 승인을 얻어야 한다.

③ 이 연구소의 예산 및 결산 기준일은 한국수자원학회 회계 기준일과 같이 한다.

제 16 조(예산, 결산) ① 연구소의 예산 편성은 일반 회계연도에 따르며, 한국수자원학회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.

② 연구소의 예산편성과 결산 및 집행은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연구소장이 행하며, 그 권한과 책임은 연구소장에게 있다.

부 칙

제1조 (시행일) 이 규정은 2009년 5월 22일부터 시행한다.